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15 선고 2020나64000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

담당변호사 최준기

변 론 종 결 2021. 9. 10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5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6. 16. 선고 2019가소57986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3.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, 이 법원에서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1), 예비적 청구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8. 18. 피고와,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(이하 ‘이 사건 면허’라 한다)와 차량(차량번호 1 생략)을 매매대금 88,000,000원(계약금 10,000,000원은 계약 당일, 중도금 30,000,000원은 2018. 8. 27., 잔금 48,000,000원은 2018. 8.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)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

제6조 (위약금)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기로 한다. 피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 (위임권)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양도양수인의 선정권 기타 원고, 피고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적 권리 행사를 중개인이 대행함에 동의한다.

제8조 (포기각서) 피고는 잔금 및 명의이전 불이행시, 본 운송사업면허와 부속차량을 원고 또는 소개인이 임의로 강제로 압수하여 매각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계약금 및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.

양도자 원고는 중개인에게 (차량번호 1 생략) 개인택시를 중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전적으로 중개인에게 위임하며 개인택시 대금을 상환받지 못할 시나 계약 후로 모든 일을 중개인

이 책임지기로 약속하며 또한 양도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취하를 할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서로간의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.

나.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10,000,000원 및 중도금 30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.

다. 피고는 그 후 C와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면허와 차량을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관할관청에 원고로부터 C 앞으로 이 사건 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, 위 관할관청은 C이 양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불허하였다.

라. 결국 피고는 2018. 9. 초경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, 원고는 2018. 9. 7.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,000,000원을 반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1) 주위적 청구

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면허를 C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C이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. 피고가 주선했던 전매수인인 C의 양수자격 부적격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는 피고 측 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었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‘C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.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이를 C에게 반환하겠다’고 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C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으나, 피고는 C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. 원고는 이처럼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중도금에 더하여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었던 계약금까지 반환하게 된 것이므로 위 합의해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예비적 청구

피고는 원고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을 C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인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는 원고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.

3.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, 을 제5호증, 을 10호증의1,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,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하게 되었다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,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20. 1. 6. ‘협약에 의한 계약 해지 후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반환받고 피고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를 두고 피고가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’는 이유로 혐의 없음(증거불충분)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,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. 8. 21.자 대화내용에 의하면, 원고는 2018. 9.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 측 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. 9. 6.자 대화내용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에게 ‘C으로의 이 사건 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양보해주려고 피고의 처 명의로 입금하였던 중도금은 피고의 처에게, 피고가 직접 입금하였던 계약금은 피고에게 입금시키려 하고 있는데, 피고가 차량의 미터기와 서류 반환 문제에 있어 비협조적’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

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3호증의 2, 3의 각 기재만으로는, 위 증거, 을 제5호증, 을 제10호증의 1,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.

[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,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인바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15292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C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]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,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성훈, 판사 최수진, 판사 황정수

1) 다만 제1심에서는 계약금 지급이 착오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, 이 법원에서는 기망에 의한 합의해제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[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, 취소, 무효,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).]